

# 地域的으로 본 就業実態

—車 珪 潤

〈한국해외개발공사개발부 협약과장〉

우리나라 간호원의 해외취업이 정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서독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서 부터이며, 이때부터 집단적인 해외 취업의 길이 트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왔다. 지금까지 해외로 진출한 간호원의 해외취업을 2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출국전에 고용할 병원측이나 또는 초청상대국 정부당국과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제반고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한 후 취업하였다가 동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야 하는 단순취업(3년미만)과 희망자 본인의 신청으로 상대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입국 허가를 받아 취업의 길이 이루어진 취업이민의 경우이다. 예컨대, 전자는 과거 서독으로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활발한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중동지역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이민형식으로 출국하게 되는 단지 미국의 경우인 것이다.

먼저 후자인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1962년 3월 해외이주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간호원은 1972년까지 10여년간 1천 5백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1973년 최고로 1,244명이 진출한 이래 작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9백여명이 진출하여 금년 3월말까지 총 6,322명이 이주 진출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간호원의 취업이주 사정은 크게 양상이 변화했다.

우리는 요즈음도 간혹 우리주위에서 간호원들

이 취업이민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가 이미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 이민국에 페릭슨(입국청원)을 신청하여 1977년 2월말까지 입국허가를 받았었던 사람들이다.

1977년 1월 1일 이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현재는 간호원은 물론 의사, 약사 등 의료요원의 취업이민 길은 거의 막혀있는 상태이다. 간호원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신청(제 3위)은 1976년 말까지는 이주희망자 본인이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직접 미국 이민국에 우송함으로써 월드의 노동허가나 고용계약서가 없이도 승인되었으나, 1977년 부터 일반 기능공의 취업이민(제 6순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 고용계약과 노동허가가 요구됨으로써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즉 미국 취업이주 희망자는 먼저 고용주를 물색하여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다음 다시 이민국에서 이민 입국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고용주의 물색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고용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해서 노동허가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노동허가가 발급된 후에도 이민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기까지는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된다.

노동허가 신청시 부터 이민국 허가 까지의 기

간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좀처럼 마음먹고 취업이된 수속을 착수하게가 어려운 실정이다.

위의 수속과정을 미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여 우선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주업선 법인체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국내 법인체나 미국직업소개소에 지불하여야 할 알선 수수료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미국 취업이민은 수속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청희망자도 없고, 이민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은자도 없음을 볼 때 향후 미국 정책에 따른 획기적 전환이 있기 이전에는 사실상 간호원의 취업이민 진출은 상당히 어려워 졌다고 보겠다. 다만 기 미국에 진출한 한국간호원의 경우는 어느나라 보다도 여성으로서의 인정받는 전문직으로서 수입이나 대우가 월등하여 인기를 차지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만족하고 있으나, 과거 서독에 진출한 간호원들과는 달리 친절 상냥하다는 칭찬보다는 근면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있다. 이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의, 업무상 언어소통 부자유에서 오는 핸디 캡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미국내 주마다 또한 병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고 임금 역시 지역(대별하여 서부, 중부, 동부)에 따라 달라 RN간호원의 경우 월 \$700—\$1,300까지가 통폐이며, RN 시험에 통과할때까지는 임시직이나 보조원의 대우밖에는 기대할 수 없어 월 \$300~\$60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간호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많이나고 있다. 병원내의 기숙사 생활이란 미혼의 경우 최초취업 6개월 정도 이내이며, 대부분 개인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곳의 한국 간호원들이 단순 취업의 경우와 크게 다른점이 있다면, 고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득이한 중도귀국등 제한된 숙박을 벗어나 좀더 대우가 좋은 다른 병원으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병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특혜라 하겠다.

다음은 해외이민이 아닌 해외취업의 경우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간호원의 최초 해외진출의 계기가 되었던 서독의 경우는 “국별근로조건 현황표”〈별표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이후 1976년 까지 약 1만명에 가까운 간호요원이 진출하였고, 현재 약 6천여명이 현지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나, 작년 하반기 서독정부는 자국실업자 문제해결책으로 체류 5년 미만의 한국 간호원의 체류허가를 더이상 연장하여주지 않고 출국시키기로 결정하여 3천여명의 우리 간호원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독 병원협회나 각처의 종합병원등에서 한국 간호원들이 여지껏 쌓아놓은 실적과 이들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나, 이는 한국 여성이 상당하고 부지런하며, 특히 책임감이 강해 서독 어느 병원에서나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한국간호원의 진출대상국은 주로 서독 한 나라에 국한되어 왔으나 74년 유류 파동이후 서독정부가 자국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근로자의 입국제한조치를 취하게 되므로써 75년 이후 서독에의 진출이 추진하던중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中東으로 빠져 진출하게 될 기회가 오게 되었다.

75년말부터 中東 産油國들이 有限한 油일 탈러 수입으로 항만, 도로, 종합병원, 각종 고층빌딩, 주택, 나아가서는 사막의 農土化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전설들이 활발해 지면서 부터 한국의 對 中東 인력진출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제도 개선등 선진국 대열에 발맞추고자 하는 이들의 대열속에 우리나라 간호원의 참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간호원의 중등진출은 1976년초 이후 이란의 4개국에 불과 수백명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우기 금년부터는 아프리카 지

역에도 진출하게 되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1977년초부터 부쩍 中東지역 여러국가의 보건성 장관, 차관, 간호국장 또는 종합병원 원장등이 내한하여 자국에 필요한 우리나라 의료요원을 한국정부가 직접 주선하여 파견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왔고, 우리 정부와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고용조건이 한국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이들과 합의 송출해 왔다.

지난 10월말 쿠웨이트 보건성 장관이 내한하여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현재 쿠웨이트에 건립중에 있는 5백개의 병동을 갖춘 종합병원을 한국정부가 파견하는 의료단이 인수운영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 종합병원은 앞으로 쿠웨이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될때까지 3년 이상을 한국의료단이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쿠웨이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초 1차로 우리나라 간호원 67명과 임상 병리사(여자) 16명이 출국하여 근무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현지에 숙소시설이 완비되는대로 출국하게 될 남자 임상 병리사 30여명이 대기중에 있다.

작년에 172명이 취업한 사우디 아라비아 중앙병원에서는 병원당국이나 환자들로부터 한국간호원이 최고라는 찬사를 듣고있어 모든 피로를 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한국의 열을 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금년 2월과 4월에 바레인 정부 종합병원에 취업한 간호원 65명은 처음 언어소통의 장애로 곤경을 받았으나 차츰 친절하고 부지런한 것을 인정받기 시작하여 현지에 취업한 인도 간호원들보다 두배에 가까운 임금을 출만하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현지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어 중정부도 만만치 않지만 3천여명에 가까운 우리 건설기능공들이 진출해와 함께 일하고 있음에 더욱 자랑스럽기만 하다는 반가운 이야기가 최근 전해오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한국 간호원들은 중동지역 도처에서 외화획득은 물론 국적을 초월한 봉사활동으로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간호원의 해외진출은 일자리가 있다고 마구 달려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당국과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상대국정부 또는 고용주와 다음 몇가지 중요사항 이외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1. 월평균 임금은 400달러 이상 이어야 함.
2. 고용계약기간은 가급적 1년으로 하며, 특별보너스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3. 왕복 항공료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함.
4. 숙소, 식당 및 오락시설등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함.
5. 재해보험 및 의료혜택은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함.

위의 제반조건외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해외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별 한국간호원의 취업실태는 “국별 근로조건 현황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동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하게 임금은 월평균 600달러, 고용계약 기간은 1년, 왕복항공료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숙식은 기본임금과는 별도로 무료 제공되고 있다.

현재 중동 대부분의 산유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놀라울만큼 높아 바레인의 경우 5천달러에서 쿠웨이트는 1만 3천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75년말부터 중동지역 전역에 펼쳐진 건설의 불은 향후 적어도 5년 내지 10여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면 한국인력의 대거 진출이 기대되는 바 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원 해외취업 희망자에게 안내한다면 중동지역에서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병원내에서의 임상근무는 모두 영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사전 어학교육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해외취업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종로구 연건동)취업부 등록과(전화 762-9151)에서 항시 안내 상담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원의 문의를 환영하고 있다.

국별 한국 간호원 근로조건 현황

1978. 4. 30 현재

내 용	지 역	서	특	사우디아라비아	이	란	쿠웨이트	바	베	인	아랍트후국	아 프 리 카
병원 종류		일반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	소아 종합병원	정부 및 일반 종합병원	정부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	정부 종합병원	정부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	정부 종합병원
진출년도		1965~1976		1977	1976~1977	1977~1978	1978	1976~1977	1978	1976~1977	1978	1978. 6월 출국예정
진출인원		간호원 : 5, 514명 간호보조원 : 3, 863명		간호원 : 172명 임상병리사 : 10명 물리치료사 : 10명	간호원 : 69명	간호원 : 82명 임상병리사 : 16명	간호원 : 65명	간호원 : 60명	간호원 : 65명	간호원 : 60명	간호원 : 60명	간호원 : 93명 예정 의표기사 : 21명 예정
계약기간		3년		1년	1년	1년	18개월	2년				미 정
왕복항공료		고용주편도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급료(월)		\$ 450~800 (경력 및 출신배)		\$ 650~870 (경력 및 경력)	\$ 430	\$ 630~700 (학력 및 경력)	\$ 715	\$ 424				\$ 500 이상 예정
근무시간		주 42시간		주 55시간 이내	주 40시간	주 44~48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미 정
숙 소		취업자부담(월세)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일부 부담 (주택 수당)
식 사		취업자부담(월비)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근무시에 한함)	고용주 부담	취업자 부담	고용주 부담	취업자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일부 부담
년 가(유급)		특별노동법에 준함		년 45일	7일/매 3개월	1차년 : 21일 2차년 : 45일	년 36일	년 36일	년 36일	년 36일	년 36일	년 36일
병 가(유급)		특별노동법에 준함		년 30일	년 24일	년 2개월	년 15일	년 24일	년 24일	년 24일	년 24일	년 30일
보험 및 의료혜택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고용주 부담
상 여 금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없음	계산만 표시 1개월분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년 1개월분
출국전 어학교육		교육비 : 취업자 부담		고용주 부담	취업자 부담	고용주 부담	취업자 부담	취업자 부담	취업자 부담	취업자 부담	취업자 부담	미정